
4. 재정운용계획

4 재정운용계획

4-1. 중기지방재정계획

▣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공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.

❖ 연도별 재정전망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합 계	연평균 증가율
세 입	863,558	879,645	896,876	916,009	936,491	4,492,579	2.0
자 체 수 입	88,701	89,613	93,232	96,393	99,511	467,450	2.9
이 전 수 입	619,462	627,421	651,975	673,165	680,550	3,252,573	2.4
지 방 채	0	0	0	0	0	0	0
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155,395	162,611	151,669	146,451	156,430	772,556	0.2
세 출	863,558	879,645	896,876	916,009	936,491	4,492,579	2.0
경 상 지 출	160,139	161,137	162,989	165,946	173,222	823,435	2.0
사 업 수 요	703,419	718,508	733,887	750,063	763,269	3,669,144	2.1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(공기업, 기타), 기금

▶ 연평균 증가율 = $[(\text{최종연도}/\text{기준년도})^{1/(\text{전체연도 수} - 1)} - 1] \times 100$

4-2. 성인지 예산현황

☐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☐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공주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76	32,502
여성정책추진사업	11	2,626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48	24,440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17	5,436

▶ 2019 당초예산 기준

●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3 주민참여 예산현황

-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,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-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(주민주도형·주민참여형)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.

<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>

구분	주민제안사업		일반 참여예산사업
	주민주도형	주민참여형	
구분 기준	-예산편성 한도 설정 -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	-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-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	-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※단,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- 단위·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

- 다음은 공주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예산규모 (당초예산)	주민제안사업		일반참여예산사업
	주민주도형	주민참여형	
41,406	6,413	2,070	32,923

▶ 2019년 당초예산 기준

❖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(별첨 1)

4-4. 성과계획서

-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공주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실국명	성과계획				예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		단위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
		개수	지표수				
계	10	83	137	195	711,540	597,542	114,002
기 획 담 당 관	1	3	3	5	33,592	32,687	905
시 민 소 통 담 당 관	1	1	3	3	3,593	3,622	-28
감 사 담 당 관	1	1	1	2	130	130	0
시 민 자 치 국	1	19	29	53	171,511	150,326	21,185
문 화 관 광 복 지 국	1	19	28	37	224,521	196,259	28,262
경 제 도 시 국	1	23	39	50	188,987	131,738	57,250
의 회 사 무 국	1	1	2	2	2,604	2,654	-49
보 건 소	1	4	7	11	15,688	14,192	1,496
농 업 기 술 센 터	1	8	18	27	63,561	59,921	3,640
사 업 소	1	4	7	5	7,353	6,013	1,341

- 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- 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(<http://www.gongju.go.kr>)

4-5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18.66	66.34	27.91	30.92	48.78	97.12

- 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- 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(<http://www.gongju.go.kr>)

4-6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자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(총액)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135	79	0
	부단체장		56	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92	278	△14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동경비	203	49	△20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	93	
	의원국외여비		31	
	의원역량개발비 (민간위탁)		10	
지방보조금		17,688	12,173	△5,500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1,376	1,376	0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1,320천원/1인기준	1,603	△332
공무원 일·숙직비		50천원/1인기준	334	0

- ▶ 기관운영 업무추진비,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)'을 참조 하세요(<http://lofin.moi.go.kr>)

- ☞ 기관운영업무추진비 : 총액한도제 운영
 - 2018년부터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
 - 전년도 기준액을 참고하여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기준액을 각각 79백만원, 56백만원으로 예산 편성

- ☞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: 충남도에서 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하며 기준액은 292백만원으로 2019년 예산은 278백만원을 각 부서에 나눠 편성

- ☞ 지방의회 관련 경비 : 총액한도제 운영
 - 2018년부터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3개 통계목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,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을 반영, 자율적으로 편성·운영
 - 총액한도는 4개 통계목별(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, 지방의원국외여비, 의원역량개발비) 최근3년간 당초예산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산정, 지방의회관련 경비총액은 183백만원 편성

- ☞ 수립기준 산정기준에 따라, 지방보조금 예산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 17,168백만원을 일정공식을 계산 해 2019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17,688백만원(총한도액)을 산출, 한도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 자체재원 12,173백만원을 편성
 - * 적용대상 :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, 사회복지사업보조, 민간자본사업보조

- ☞ 통장·이장·반장 활동보상금 : 수립기준 별표 4에 따라 이장수당 200천원/월, 이장상여금 연200%, 회의참석수당 20천원/회이며, 반장수당은 50천원/연이 기준액으로 2019년 예산은 총 1,376백만원 편성

- ☞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2019년 행정안전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 : 1,320천원
 - 대상인원 : 1,466명 / 기준액 1,935백만원 내 1,603백만원 편성

- ☞ 공무원 일·숙직비 : 수립기준 별표6에 따라 일·숙직 50천원 기준액으로 2019년 예산은 총 334백만원을 편성

4-7. 국외여비 편성현황

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세출예산총계 (A)	국외여비 총액 (B=C+D)	국외업무여비 (C)	국제화여비 (D)	비율 (B/A)
650,000	623	78	545	0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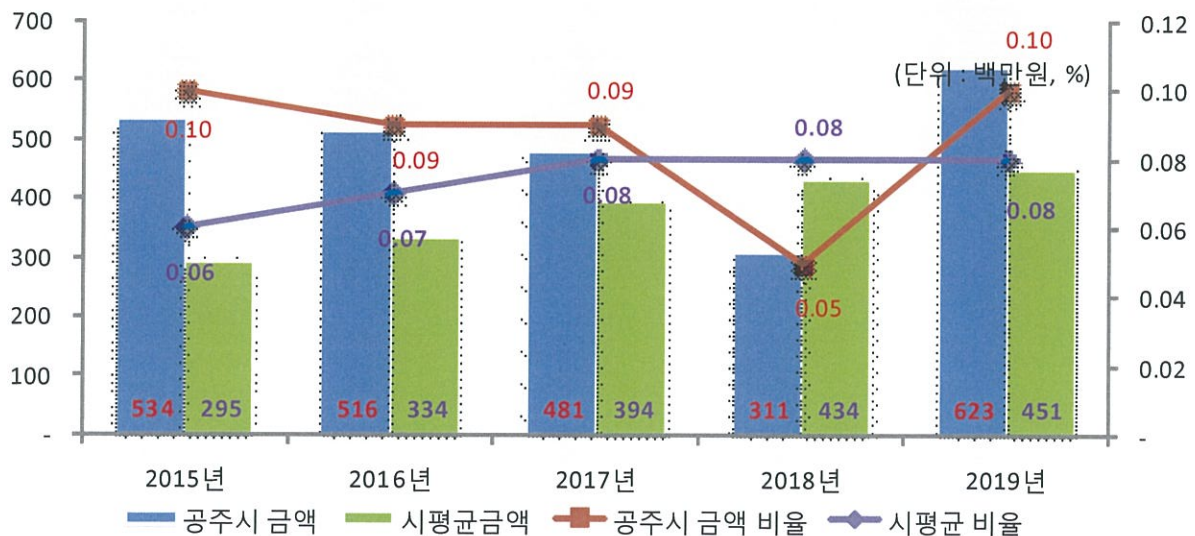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 (202-03 국외업무여비, 202-04 국제화여비)

❖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도별				
	2015	2016	2017	2018	2019
세출예산총계 (A)	551,100	552,200	556,000	594,500	650,000
국외여비 총액 (B=C+D)	534	516	481	311	623
국외업무여비 (C)	101	83	77	87	78
국제화여비 (D)	433	433	404	224	545
비율	0.10	0.09	0.09	0.05	0.10

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



4-8. 행사·축제경비 편성현황

☐ 다음은 우리 공주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,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세출예산액 (A)	행사·축제경비 (B)	비율 (B/A)	비 고
580,500	5,561	0.96	
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
- ▶ 대상과목 : 행사운영비 (201-03), 행사실비보상금 (301-09), 민간행사사업보조(307-04), 행사관련시설비 (401-04)

❖ 행사·축제경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도별				
	2015	2016	2017	2018	2019
세출예산액	473,000	480,000	487,000	520,000	580,500
행사·축제경비	3,640	5,100	4,192	4,450	5,561
비율	0.77	1.06	0.86	0.86	0.96

행사·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

